

#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계약심의대상 사업의 범위를 “공사 30억이상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)”에서 “공사 50억원이상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)”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4조제1항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련법령 발췌서 : 별첨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08조

## □ 관련사업 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## □ 입법예고 : 2008. 5. 30 ~ 6. 9.(10일간)

## □ 기타참고 사항 : 해당없음

-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(2008. 5. 29)

#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0억원 이상인 공사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)” 을 “50억원 이상인 공사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시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계약담당 양영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유연하 (행정 3076)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<u>30억원 이상인</u> 공사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<u>5억원 이상</u>)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 ①..... .....</p> <p><u>50억원 이상인</u> 공사(물품, 용역 등의 경우에는 <u>10억원 이상</u>)..... ....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